

14차 노동재해방지계획

2023. 5..

일본 후생노동성

<목차>

서론	4
1. 계획의 목적	4
(1) 계획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	4
(2) 계획 기간	5
(3) 계획 목표	5
가. 산출지표(output indicator)	5
나.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	7
(4)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	8
2. 안전보건을 둘러싼 현황 및 시책의 방향성	8
(1) 사망재해의 발생상황 및 대책의 방향성	8
(2) 사상재해의 발생상황 및 대책의 방향성	9
가. 사상재해의 발생상황	9
나. 사상재해의 증가 요인 및 대책의 방향성	11
(3) 근로자의 건강을 둘러싼 동향 및 대책의 방향성	14
가. 정신건강대책 관련	14
나. 업무과중 방지대책 관련	15
다. 산업보건활동 관련	15
(4)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의 현황 및 대책의 방향성	15
(5)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보건대책 도입을 위한 의식 계발의 중요성	16
3. 계획의 중점사항	17
4. 중점사항별 구체적 시책	17
(1) 자발적으로 안전보건대책에 힘쓸 수 있는 의식의 계발	17
가. 안전보건대책에 임하는 사업자가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환경 정비	17
나. 재해정보에 대한 분석기능의 강화 및 분석결과의 효과적 주지	18
다. 노동안전보건에 있어서 DX(디지털 전환)의 추진	19
(2)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19
(3)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20
(4) 다양한 근로방식의 대응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재해방지대	

책의 추진	20
(5)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의 추진	21
(6) 업종별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22
가. 육상화물 운송업 대책	22
나. 건설업 대책	22
다. 제조업 대책	23
라. 임업 대책	24
(7) 근로자의 건강확보대책의 추진	24
가. 정신건강 대책	24
나. 업무과중 대책	25
다. 산업보건활동의 추진	25
(8)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대책의 추진	26
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대책	26
나. 석면,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대책	27
다. 열사병,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대책	28
라. 전리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대책	28

서론

일본의 “노동재해방지계획”은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병의 급증을 고려해 1958년 1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사회경제 정세와 기술 혁신, 근로방식의 변화 등에 대응하면서 현재 13차에 이르렀다.

그 동안, 산업재해나 직업성 질병의 방지에 힘써 온 국가, 사업자, 근로자 등 관계자가 협조해 안전보건활동 추진 시 실시사항, 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근로현장은 안전보건의 수준이 대폭 개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노동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이하‘사망자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준이 낮다고는 할 수 없다. 노동재해로 인한 휴업일 수 4일 이상의 사상자수(이하 ‘사상자수’)의 경우, 최근 몇 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노동재해 발생률(연천인율¹⁾)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장의 노동재해 발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터에서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과 관련된 과제는 정신건강과 업무과중 대응, 근로자의 고령화와 여성 취업률의 증가에 따른 건강 과제, 치료와 일의 양립에 대한 지원, 코로나 시국 하에서의 재택근무 확대, 화학물질의 자율관리대응 등 다양해지고 있어 현장 니즈의 변화에 맞춰 산업보건체제와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13차 노동재해방지계획 기간 중(2018년도~2022년도), 화학물질로 인한 중대한 건강재해방지와 석면사용 건축물의 해체 공사 등에 대한 대책도 꾸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노동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하고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실현하고자 2023년도부터 5년간 국가, 사업자, 근로자 등의 관계자가 지향 목표와 중점적 이슈사항을 정한 ‘14차 노동재해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바이다.

1. 계획의 목적

(1) 계획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의 책무를 지는 사업자 및 발주자, 그 이외에 근로자, 소비자·서비스 이용자 등 모든 관계자가 안전보건대책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이

1) 역주: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수

중요하다.

이러한 안전보건대책은 위드 코로나 시대 및 코로나 이후의 사회,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의 발전을 고려하고 AI나 웨어러블 단말기,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취업 형태의 변화는 물론 노사간의 니즈와 가치관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용으로서의 인건비에서 자산으로서의 인적투자’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대책이 사업자의 경영전략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보건대책이 인재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대책을 실천하는 사업자가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안전과 건강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사업장의 규모, 고용형태와 연령 등과 상관없이 어떠한 근로방식 하에서도 ‘웰빙’*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3 Goal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

(2) 계획 기간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이다.

(3) 계획 목표

국가, 사업자, 근로자 등 관계자들이 하나가 되어 ‘근로자 재해 제로’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 각 지표를 정하여 계획 기간 내 달성을 목표로 한다.

가. 산출지표(output indicator)

본 계획은 아래 계획의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로써 근로자의 협력 하에서 사업자가 실시하는 다음 사항을 산출지표(아웃컴 지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계획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취급한다.

(가)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 넘어짐 사고 재해 대책(하드 면 및 소프트 면의 대책)을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을 2027년까지 60% 이상으로 향상 【P】
- 도매업 및 소매업/의료 및 복지 관련 사업장에서 정규직 이외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율을 2027년까지 90% 이상으로 향상 【P】

·간병·간호작업 시 ‘노리프트 케어(No Lift care)²⁾’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을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증대 **【P】**

(나) 고령근로자 대상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고령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0년 3월 16일자 후생노동성 안전위생부과장 통달 0316 제1호, 이하 “에이지 프렌들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활동(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 직장환경의 개선 등)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2027년까지 60% 이상으로 향상 **【P】**

(다) 다양한 근로방식의 대응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각국의 모국어 번역 교재, 시청각 교재의 이용 등 외국인 근로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재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2027년까지 60% 이상으로 향상 **【P】**

(라) 업종별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육상화물 운송사업에 있어서 하역작업의 안전대책 가이드라인”(2013년 3월 25일자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통달 0325 제1호, 이하 “하역작업에 있어서 안전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조치를 실시하는 육상화물 운송업 등의 사업소(화물주의 사업소를 포함함)의 비율을 2027년까지 0% 이상으로 향상 **【P】**

·떨어짐 사고 재해방지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도입한 건설업 사업소의 비율을 2027년까지 0% 이상으로 향상 **【P】**

·기계에 의한 ‘끼임 및 말림 사고’ 방지대책을 도입한 제조업 사업소의 비율을 2027년까지 0% 이상으로 향상 **【P】**

·“체인톱을 이용한 벌목작업 등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년 1월 31일자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통달 0131 제3호)에 의거한 조치를 실시하는 임업 사업소의 비율을 2027년까지 0% 이상으로 향상 **【P】**

(마) 근로자 건강확보대책의 추진

·정신건강대책을 도입한 사업자의 비율을 2027년까지 0% 이상으로 향상 **【P】**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스트레스 체크 실시 비율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향상 **【P】**

·필요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2027년까지 0% 이상

2) 역주: ‘노리프트 케어’란, 말 그대로 ‘들어 올리지 않는’ 방식을 말함. 각 환자나 시설 이용자의 자립도를 고려한 복지용구사용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고, 환자 입장에서 보호자가 힘을 주어 안아 올릴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근육 긴장이나 관절에 대한 무리를 덜 수 있음

으로 향상 【P】

(바)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방지대책의 추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이하 ‘GHS’)에 따른 분류 결과,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라벨 표시, 안전 데이터 시트(이하 ‘SDS’)를 교부받은 사업장의 비율을 2027년까지 각각 80% 이상으로 향상 【P】

·GHS에 따른 분류 결과,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 중인 사업장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자율적 화학물질 노출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2027년까지 〇% 이상으로 향상 【P】

·열사병 재해방지를 위해 WBGT 지수(더위 지수)를 파악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증대 【P】

나.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

사업자가 산출지표(아웃풋 지표)에 정한 사항을 실시한 결과, 그에 따라 기대되는 사항을 결과지표(아웃컴 지표)로 정하여, 계획 수립 시 실시사항에 대하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로 취급한다.

참고로 결과지표에 제시한 수치는 계획 수립 시 일정한 가정과 추정, 기대에 맞춰 시산 및 산출한 기준으로, 계획기간동안 종래와 같이 단순히 수치비교를 통해 달성 상황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추정 및 기대가 바르게 설정되었는지까지 포함해 사업자의 활동이 계획상의 결과지표와 잘 연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가)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증가 추세에 있는 넘어짐 사고의 연령별 연천인율을 2021년 실적 대비 2027년까지 남녀 모두에 대하여 증가 추세에 제동

·넘어짐 사고로 인한 평균 예상 휴업일수를 2027년까지 40일 이하로 감소

·증가 추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요통 연천인율을 2022년 대비 2027년까지 감소

(나) 고령근로자 대상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증가 추세에 있는 60대 이상 연천인율을 2021년 실적 대비 2027년까지 남녀 모두에 대하여 증가 추세에 제동

(다) 다양한 근로방식의 대응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

진

·외국인 근로자의 연천인율을 2027년까지 전체 평균 이하로 감소

(라) 업종별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육상화물 운송사업의 사상자수를 2027년까지 0명 이하로 감소 【P】

·건설업의 사망자수를 2027년까지 0명 이하로 감소 【P】

·제조업에서 기계에 의한 끼임 및 말림 사고 사상재해건수를 2027년까지 0건 이하로 감소 【P】

·임업의 사망자수를 2027년까지 0명 이하로 감소 【P】

(마) 근로자 건강확보대책의 추진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이상인 고용자 중 주당 노동시간 60시간 이상의 고용자 비율을 2025년까지 5% 이하로 감소 【P】

·외부기관을 포함해 정신건강대책에 대한 상담 체제를 도입한 근로자의 비율을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향상 【P】

(바)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방지대책의 추진

·화학물질이 원인인 재해로, 화학물질의 성상과 관련성이 강한 것(유해물 등과의 접촉, 폭발, 화재에 의한 것)의 사상재해건수를 2021년 실적 대비 2027년에는 0% 이상 감소 【P】

·증가 추세에 있는 열사병 사망자수의 증가율*을 13차 노동재해방지계획 기간 대비 감소

※당기 계획기간동안의 총수(total)를 전기 동일 계획기간동안의 총수로 나눈 비율

위 결과지표를 달성할 경우, 전체 사상재해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망재해의 경우, 2021년 대비 2027년 0% 이상 감소 【P】

·사상재해의 경우, 2021년까지 계속된 증가 추세에 제동을 걸어 연천인율을 2021년 대비 2027년까지 감소로 전환 【P】

(참고) 결과지표에 대한 견해 【P】

(4)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

계획에 따른 활동이 꾸준히 시행되도록 매년 계획 실시상황을 확인하고 평가해 노동정책심의회 안전보건분과회에 보고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계획을 재검토한다.

계획을 평가함에 즈음해서는 각각의 산출지표(아웃풋 지표)에 대하여 계획에 따른 실시사항이 산출지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울러 산출지표로 정한

사업자의 활동이 결과지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2. 안전보건을 둘러싼 현황 및 시책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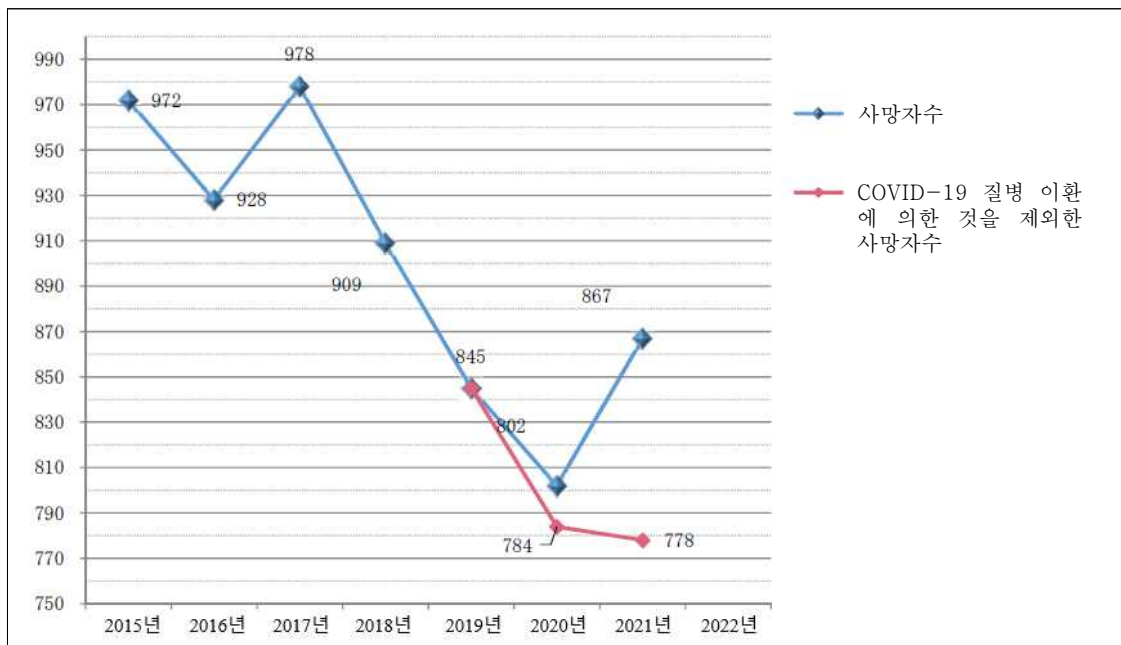
(1) 사망재해의 발생상황 및 대책의 방향성

사망재해는 2015년에 1,000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2021년 사망자수는 867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88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137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고 형태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고소 작업 시 ‘떨어짐 사고’가 110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의 경우 기계 등에 의한 ‘끼임 및 말림 사고’가 54명으로 가장 많다.

13차 노동재해방지계획의 중점 대상인 임업의 경우, 2021년 사망자수가 3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나, 이 중 벌목작업 시에 ‘물체에 맞는 사고’가 15명이었다.

이처럼 각 업종의 업무내용에 기인하는 특유의 재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망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재해 방지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망자수(사망재해 보고)



업종, 사고 유형별 사망재해 발생상황 (2021년) (사망재해 보고)

	떨어 짐	넘어 짐	부딪 힘	날아오 거나 떨어짐	무너 짐	물체 에 맞음	끼임 및 말림	절단 및 찰과	찢림	빠짐	고온· 저온 물질 접촉	유해 물질 접촉	감전	폭발	파열	화재	교통 사고(도로)	교통 사고(기타)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기타	분류 불능	합계
산업 전체	21	26	3	38	42	62	135	2	0	25	22	17	13	3	1	8	129	6	0	113	5	867
제조업	25	2	2	10	2	11	54	0	0	2	4	6	2	2	0	0	7	0	0	8	0	137
건설업	11	5	1	10	31	19	27	2	0	10	11	9	8	0	0	1	25	1	0	15	3	288
육상 화물 운송 사업	12	3	0	5	3	6	11	0	0	0	1	0	0	0	1	0	37	0	0	16	0	95
임업	5	2	0	4	1	15	1	0	0	1	0	0	0	0	0	0	0	0	0	0	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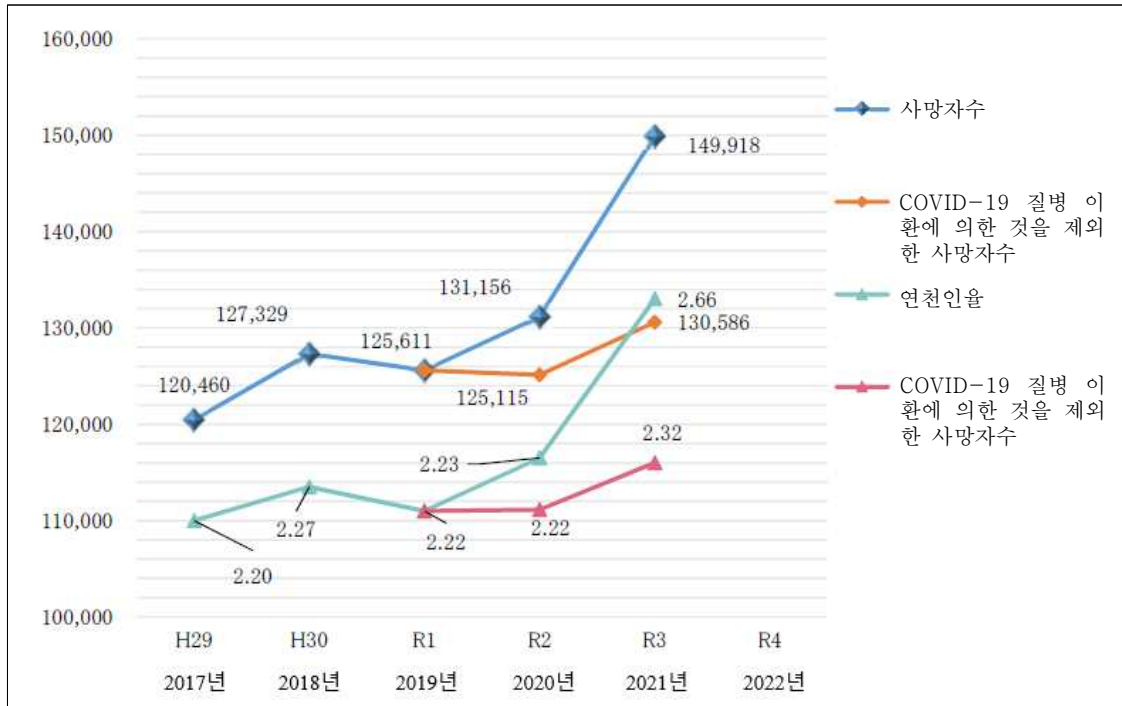
(2) 사상재해의 발생상황 및 대책의 방향성

가. 사상재해의 발생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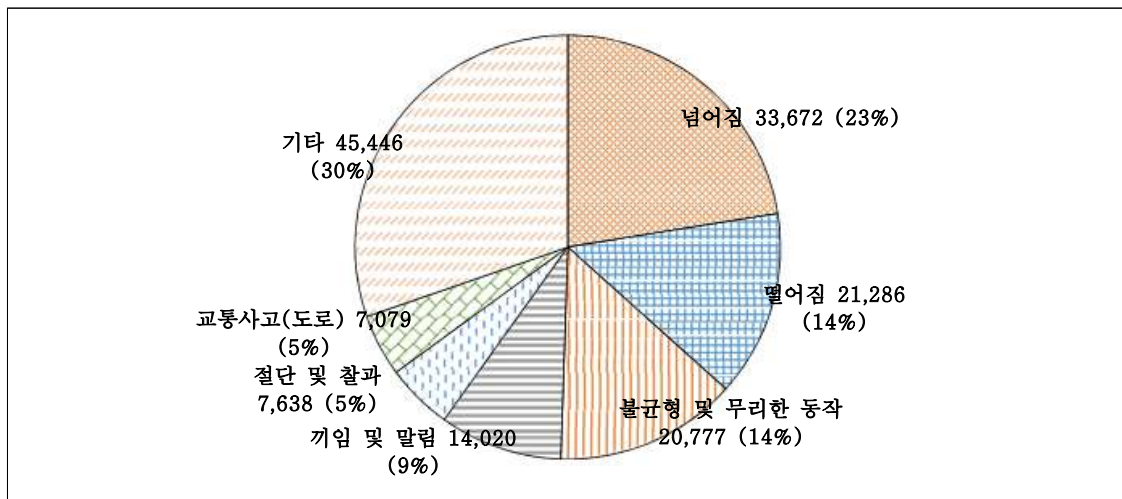
사상재해는 13차 노동재해방지계획 기간동안(2018년~2022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질병 이환으로 인한 영향도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사상재해건수, 연천인율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 형태별로는 ‘넘어짐’(23%),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14%)이 노동재해 전체의 약 40%(37%)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3차 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28%)과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16%)으로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노동재해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자수 증가에 수반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상자수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노동재해 방지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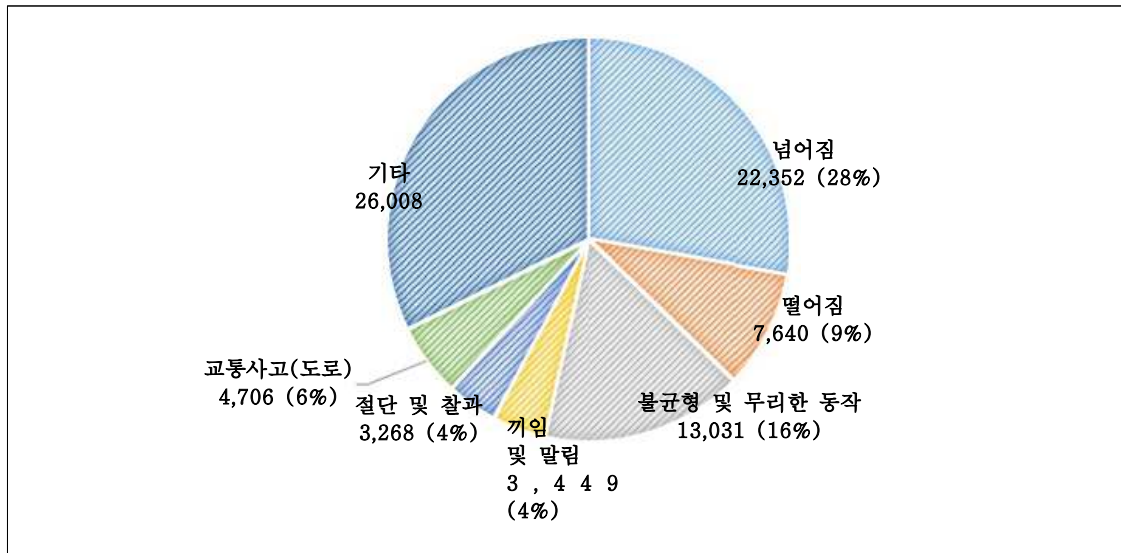
휴업일수 4일 이상 사상자수(근로자 사망·부상·질병 보고)



2021년도 휴업일수 4일 이상 사상자수 (사고 유형별) (근로자 사망·부상·질병 보고)



2021년도 3차 산업의 휴업일수 4일 이상 사상자수 (사고 유형별)
(근로자 사망·부상·질병 보고)



나. 사상재해의 증가 요인 및 대책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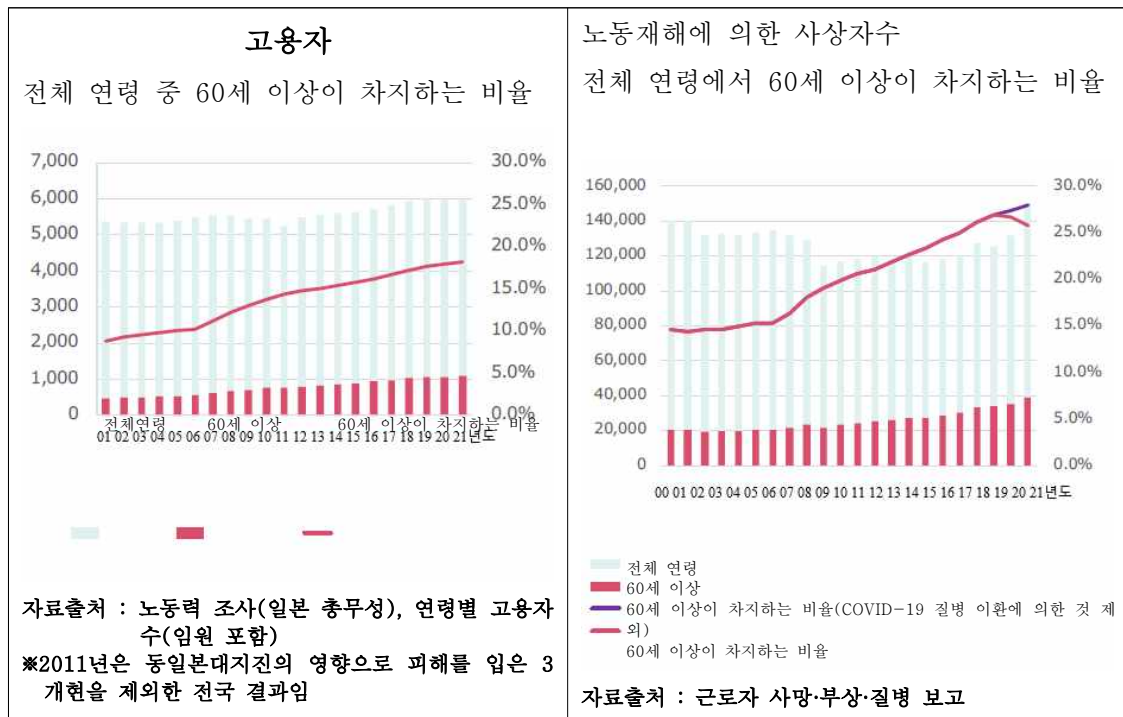
사상재해의 증가는

- ① 노동재해 발생률(연천인율)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증가 중이라는 점
- ② 특히 3차 산업 취업자의 증가에 수반해 기계설비 등에 기인하는 노동재해가 아닌, 대책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노동재해가 증가 중이라는 점
- ③ 안전보건대책이 뒤쳐진 3차 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노동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그 배경으로 열악한 경영환경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안전보건대책의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점
- ④ 그 외에 최근 노동재해의 증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생활방식의 변화와 그에 수반된 음식배달 서비스와 택배 수요 증가로 인한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위 ①의 경우, 전체 연령에서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2021년 데이터에서는 약 20%를 기록했다. 또한 고령근로자는 신체 기능 저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재해 확률이 높고, 그 결과, 2021년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휴업일수 4일 이상인 사상자수가 전체 연령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넘어섰다. 그 외에도 재해를 입은 경우의 휴업기간도 젊은 층에 비해 길어 고령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위 ②의 경우,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노동재해 방지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위 ③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에 수반되는 노동 이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확대에 의한 일시적 고용 조정과 요식업 등의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서투른 근로자가 증가한 점도 사상재해의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연령별·경험기간별 연천인율을 보더라도, 경험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경험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비해 높으며, 특히 50~59세 연령층에서 보았을 경우,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3차 산업 등 근로자가 증가 중이거나 근로자 교체가 빈번한 업종에서 안전보건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령별·경험 기간별 연천인율(근로자 사망·부상·질병 보고)



한편, 가령 2018년도 노동안전보건조사(실태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의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답변한 도매업 및 소매업 사업장의 경우, 저하된 이유로 ‘경영 환경의 악화로 안전보건에 충분한 인원·예산을 할애할 수 없음(29.0%)’, ‘정규직 이외의 근로자가 증가해 관리가 어려워짐(28.7%)’을 들었다.

또한 2017년도 노동안전보건조사(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매업 및 소매업 사업장에서 정규직 이외(파견 근로자 제외)의 근로자를 과거 1년 동안 안전보건활동에 참가하게 한 비율은 60%(59.0%)에 그쳤으며, 그 이유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 ‘특별히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하지 않음(17.5%)’, ‘근무 중에 작업 이외의 활동을 할 여유가 없음(17.5%)’, ‘근무시간대, 요일이 제각각이어서(16.7%)’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열악한 경영환경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안전보건대책이 늦어지는 상황으로, 기업·사업장에서는 유가의 고공행진과 물류비용의 상승, 소비자·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제조, 물류 등에서 적은 인원으로 더욱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짧은 납기에 업무를 실시 및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노동 재해의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영상황이라도 안전보건대책에 힘써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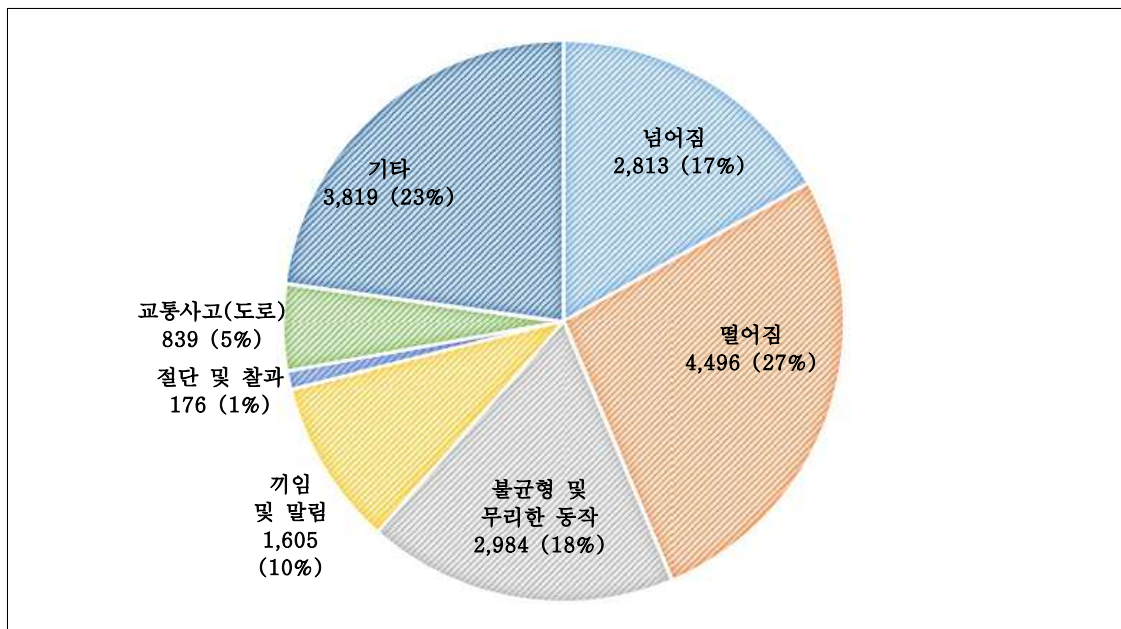
나아가 자사의 인재를 ‘비용’이 아닌, ‘자본’으로 인식해 안전보건대책을 포함한 교육과 노동환경을 정비하는데 투자하고, 사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인적자본의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위에서 열거한 ‘관리가 어렵다’ 등의 답변은 안전보건대책에 힘쓰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안전보건대책에 힘쓰는 것이 사업자의 입장에서 경영이나 인재 확보라는 관점

에서 보더라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대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 ④의 경우, 특히 물류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외출자제로 인한 택배우편 취급의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쳐 육상화물 운송사업의 노동재해가 증가했다. 또 하역 작업 중에 ‘떨어짐 사고’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최고를 기록했다.

2021년도 육상화물 운송사업의 휴업일수 4일 이상의 사상자수
(사고 유형별) (근로자 사망·부상·질병 보고)



(3) 근로자의 건강을 둘러싼 동향 및 대책의 방향성

가. 정신건강대책 관련

2021년도 “노동안전보건조사(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대책을 도입한 비율은 근로자수 5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94.4%를 차지한다. 한편,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30~49명 사업장(70.7%), 10~29명 사업장(49.6%)으로 특히 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소규모 사업장)은 정신건강대책에 대한 도입이 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산재신청 청구건수 및 인정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P】**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정신건강대책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2020년도 노동안전보건조사(실태조사)에 따르면, ①해당하는 근로자가 없음(44.0%), ②방법을 모르겠음(33.8%), ③전문 인력이 부재함(26.3%)을 들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대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나. 업무과중 방지대책 관련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이상인 고용자 중 주당 노동시간 60시간 이상 고용자의 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2021년: 8.8%(노동력 조사)), 지속적으로 시간외·휴일근로시간*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P】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

다. 산업보건활동 관련

직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 이슈는 정신건강이나 근로방식의 변화에 대한 대응, 근로자의 고령화와 여성 취업률 증가에 수반되는 건강 과제상의 대응, 치료 및 일의 양립 지원, 재택근무의 확대와 화학물질의 자율관리 대응 등 다양해지고 있는 바, 현장의 니즈 변화에 맞춘 산업보건체제와 활동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법령에 근거한 산업보건체제가 정비되어 있으나, 산업보건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례,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보험자와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산업보건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산업의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활동이 저조한 경향이 있는 바, 지역의료·보건과의 연계 등도 포함해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보건체제 확보와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노동력 인구에서 차지하는 통원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2019년: 36.8%(국민생활기초조사))하는 한편, 치료와 일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대책(통원이나 컨디션 등의 상황에 맞춰 배려하거나 조치 검토, 양립 지원 제도의 정비 등)을 시행 중인 사업장의 비율은 41.1%(2021년도 노동안전보건조사(실태조사))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대책 시행 비율도 낮다.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일을 계속하고 싶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취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업자의 지속적인 인재 확보, 근로자의 안심감과 동기부여를 향상시킴으로써 인재가 정착되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료와 일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4)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의 현황 및 대책의 방향성

화학물질에 기인하는 노동재해가 연간 약 800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화학물질의 성상과 관련성이 강한 것(유해물질 등과의 접촉, 폭발, 화재에 의한 것)이 연간 약 500건씩 발생하면서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3차 산업의 노동재해도 많다. 또한 “특정화학물질장애예방규칙” 등에 따른 개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물질에 의한 노동재해가 이 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재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한편, 사업장의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 상황을 보면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화학물질 전체에 대하여 라벨표시, SDS 교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이 2021년도에 각각 69.9%, 77.9%, 66.2%를 기록했다.

개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율적 관리규제가 앞으로 시행되는 바, 정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내 석면사용 건축물의 해체가 2030년 무렵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건축물 등의 해체·개보수 공사 시 추가적으로 석면노출 방지대책 등을 확보하고 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진폐증 소견이 있는 근로자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신규 진폐증 유소견자는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열사병으로 인해 매년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다. 한편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인정건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약 300건에 이른다. 이들 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 또한 더욱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보건대책 도입을 위한 의식 계발의 중요성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의 책무를 지는 사업자 및 발주자, 그 이외에 근로자, 소비자·서비스 이용자 등 모든 관계자가 안전보건대책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견해를 널리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이념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노동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포함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간다.

그 다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대책에 힘쓸 수 있도록 안전보건대책을 도입하는 것이 사업자의 입장에서 경영과 인재확보 및 육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사업자의 안전보건대책 촉진과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노동재해의 발생건수·비율, 사망자수 등’, ‘건강·안전 관련 활동 등’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업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안전보건대책을 도입한 사업자를 국가가 인정하는 시책 등을 통해 민간 상거래 상으로 이들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조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소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사정들이 있는 바, 자사의 안전보건대책

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대책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없애고 이러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안전보건지도를 실시하는 안전보건 컨설턴트, 노동재해방지단체 등의 관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대책에 대하여 조언 등을 할 때에는 단순히 법령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시책을 요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 다른 사업장의 우수 사례나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개별 활동
- 근거(evidence)에 입각한 구체적인 노동재해방지 시책과 그 효과
- DX(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무 효율화와 안전보건확보를 양립할 수 있는 시책
- 안전보건 시책의 수행을 통해 경영, 인재확보·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실리적 이점

등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하는 것 또한 유효할 것이다.

3. 계획의 중점사항

안전보건을 둘러싼 현황과 시책의 방향성을 고려해 아래 항목을 중점사항으로 정하고 중점사항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추진한다.

- (1) 자발적으로 안전보건대책에 힘쓸 수 있는 의식의 계발
- (2)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 (3)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 (4) 다양한 근로방식의 대응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 (5)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의 추진
- (6) 업종별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 (7) 근로자의 건강확보대책의 추진
- (8)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대책의 추진

4. 중점사항별 구체적 시책

- (1) 자발적으로 안전보건대책에 힘쓸 수 있는 의식의 계발

가. 안전보건대책에 임하는 사업자가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환경 정비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안전대책과 산업보건활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확보한 후, 사업장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주체적 활동을 실천한다.
- 국가나 노동재해방지단체가 실시하는 노동안전 방지대책과 관련된 지원 및 노동

안전보건 컨설턴트를 활용해 자사의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의 책무를 지는 사업자 및 발주자, 그 이외에 근로자, 소비자·서비스 이용자 등 모든 관계자가 안전보건대책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통해 안전보건대책을 강화하는 의미에 대하여 알리고 계몽한다. ((2. (5) 참조)
- 안전보건대책에 힘쓰는 사업자가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 우량기업 공표제도’, ‘SAFE 컨소시엄’ 뿐만 아니라 ‘건강경영인증제도’등 기존의 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가시화(눈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활용해 이들 제도나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을 널리 알린다. 이 때 대상 사업장의 거래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발주자나 구직자 등이 이 점을 주지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리한다.
- 유관 부처와 연계해 일본 내각관방이 발표한 “인적자본 가시화 지침”을 널리 알려 ‘노동재해의 발생건수·비율, 사망자수 등’, ‘건강·안전 관련 활동의 설명’등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사업자를 지원한다.
- 업무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거래처에서 안전보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현을 위해 구체적 유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널리 알린다.
- 중소 사업자의 안전보건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힘쓰는 것이 경영과 인재확보·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실리적 이점이 있음을 알린다. 한편 안전보건을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성과를 널리 주지시킨다. 이 때,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에게 익숙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자의 구체적 시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따른 개별 안전보건대책을 지도할 때에는 다른 사업장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 등에 맞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시책도 포함하도록 한다.
- 노동재해방지단체가 실시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때, 노동재해방지단체는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대책에 힘쓸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의 의식 개혁에도 신경 쓰도록 한다.
- 노동안전보건 컨설턴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 시 이점 등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일반사단법인 <일본노동안전위생컨설턴트회>와 연계해 안전보건대책에

힘쓰는 중소기업 등의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동안전보건 컨설턴트를 육성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진단기사 등과 연계해 사업장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가간 연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 산업의과대학 등과 연계해 산업보건분야의 인재육성을 추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알린다.
- 세계화에 따른 안전보건활동의 촉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노동재해 방지협회> 등과 연계해 다른 국가들의 최신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국제 공헌도 추진한다.
- 국가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시책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가 직원의 지도력을 향상시킨다.

나. 재해정보에 대한 분석기능의 강화 및 분석결과의 효과적 주지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근로자 사망·부상·질병 보고를 제출할 때에는 전자신청을 통해 기재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일부 재해사례 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망·부상·질병 보고를 상세히 분석해 재해원인 등의 요인을 더욱 심화 해석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종합연구소> 등의 체제를 정비한다.
- 노동재해통계의 기반이 되는 근로자 사망·부상·질병 보고에 대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상황과 요인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처리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법 관련 신고·신청 등 장표 인쇄에 관한 입력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원칙적으로 전자신청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보고 내용의 적정화, 통계 처리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 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로 토대로 그 유용성을 증명하고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와 연계해 재해발생 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연구성과 등의 정보 알리기를 강화한다.

다. 노동안전보건에 있어서 DX(디지털 전환)의 추진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디지털 기술이나 AI, 웨어러블 단말기 등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활동 및 위험유해작업과 관련해 원격관리·원격조작·무인화 등을 통한 작업의 안전화를 추진한다.
- 건강진단정보 등의 전자적 보존·관리, 보험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실시하고 개인정보관리에 힘쓰는 한편 보험자와 연계해 연령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질병 예방, 건강구축 등 ‘콜라보 헬스’를 실천한다.
- “노동안전보건법”에 따른 신청 등은 전자신청을 활용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안전보건활동 및 작업의 안전화를 추진하기 위해 웨어러블 단말기 등 신기술의 활용 및 기능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 증거(evidence)를 수집 및 검토한다. 추진 시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은 필요에 따라 재검토한다.
- 사업주 건강진단정보 등을 활용한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실천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건강진단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 및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콜라보 헬스’의 추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2)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넘어짐 사고 재해는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리스크임을 인지하고 방지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 근력 등을 유지하고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근로자의 운동 습관을 장려한다.
- 비정규직 고용 근로자도 포함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점 등에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 “직장에 있어서 요통예방대책지침”(2013년 6월 18일자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통달 0618 제1호, 이하 “직장에 있어서 요통예방대책지침”)을 참고해 작업형태에 따라 요통예방대책을 실천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사업자·업계에 있어서 넘어짐 사고·요통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시화(비주얼화)’함으로써 널리 알리도록 한다.

- 넘어짐 사고 등 재해방지에 이바지하는 장비나 설비 등을 보급하기 위한 보조 및 개발을 촉진한다.
- 간병 직원의 신체적 부담경감을 위한 간병 기술(노리프트 케어³⁾), 간병기기 등의 도입 등 이미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은 요통예방대책을 보급한다.
- 물리치료사 등을 활용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신체기능 유지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근력 등을 유지해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Sport in Life 프로젝트⁴⁾’(스포츠청)과 연계해 스포츠를 추진한다.
- 골밀도, 운동기능저하 증후군(locomotive syndrome) 단계, 시력 등 넘어짐 사고 재해의 발생 리스크를 ‘가시화’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 그 외에 <넘어짐 사고 방지·요통예방대책의 바람직한 방법에 관한 검토회>의 검토사항을 고려해 시책을 실천한다.

(3)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에이지 프렌들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취업상황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직장환경 개선 등을 실천한다.
- 넘어짐 사고 재해 대책을 실천한다.
- 보험자와 연계해 연령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질병 예방, 건강 구축 등 콜라보 헬스의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에이지 프렌들리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담은 요약본을 작성해 널리 알리고 계몽 활동을 실시한다.
- <넘어짐 사고 방지·요통예방대책의 바람직한 방법에 관한 검토회>의 검토사항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넘어짐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 사업주 건강진단정보 등을 활용한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실천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건강진단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 및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콜라보 헬스’의 추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위 다. (나)항 반복】

(4) 다양한 근로방식의 대응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3) 각주 2) 참고

4) 역주: 일본 스포츠청의 주관 사업으로 지자체, 스포츠 단체, 경제 단체, 기업 등이 하나가 되어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젝트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코로나 시국 하에서 재택근무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자택 등에서 재택근무 시행 시, 정신건강방안과 작업환경정비 시 유의점 등을 제시한 “재택근무의 적절한 도입 및 실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2021년 3월 개정, 이하 “재택근무 가이드라인”)“과 근로자의 건강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제시한 “부업·겸업의 촉진에 관한 가이드라인(2022년 7월 최종 개정, 이하 “부업·겸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매뉴얼을 활용하는 등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건강관리를 실천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재택근무나 부업·겸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 확보를 위해 재택근무 가이드라인과 부업·겸업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주지시킨다.
- 부업·겸업을 실시하는 근로자가 적절히 자신의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툴(근로시간, 건강진단 결과, 스트레스 체크 결과를 관리하는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노동재해 등으로 인해 척수에 손상을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신 치료연구 등을 추진하고,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직장 복귀 등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앱,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툴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위 (4) 가항 반복】
-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기법을 제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가시화’하기 위한 안전 픽토그램을 개발한다.

(5)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의 추진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대책은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의 바람직한 자세에 관한 검토회>의 논의사항을 통해 개인 사업자 등의 업무상 재해 실태 파악, 개인 사업자 스스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발주자 등의 바람직한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조치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노동안전보건법 제 22조의 규정에 관한 성령이 하청인이나 동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이외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동등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2022년 4월 공표된 바, 해당 성령의 내용을 널리 알린다.
-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은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의 바람직한 자세에 관한 검토회>의 논의사항을 통해 개인 사업자 등의 업무상 재해 실태 파악, 개인 사업자 스스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발주자 등의 바람직한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6) 업종별 노동재해방지대책의 추진

가. 육상화물 운송업 대책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하역작업 시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확립, 떨어짐 사고나 넘어짐 사고 재해 등의 방지조치, 보호모 등의 착용,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화주를 포함해 하역작업 시 안전대책에 힘쓴다.
- “직장에 있어서 요통예방대책지침”을 참고해 작업형태에 따라 요통예방대책을 실천한다. 【위 (2) 가항 반복】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육상화물 운송사업에 있어서 사상재해의 약 70%는 하역 작업 시 발생하고, 트럭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화물 상차 및 하차작업과 관련해 떨어짐 사고 방지대책을 강화한다.
- 육상화물 운송업 등의 사업소(화주 사업소 포함)를 대상으로 하역작업 시 노동재해의 대부분이 화주 사업자의 부지 등에서 발생한다는 실태 등을 토대로 화주 사업자가 시행해야 할 조치를 검토한다.
- 육상화물 운송업 등의 사업소(화주 사업소 포함)를 대상으로 하역작업 시 안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하역작업의 실태를 토대로 하역작업 시 이용하는 기계 등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검토한다.
- <넘어짐 사고 방지·요통예방대책의 바람직한 방법에 관한 검토회>의 검토사항을 고려해 넘어짐 사고·요통재해대책의 실시는 사업자의 책무라는 점과 더불어 경영상 이점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가시화’해 널리 알리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 효과적인 요통예방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요통 발생이 비교적 많은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시 사업자나 연구자의 협조를 얻어 발생요인을 더욱 상세히 분석해 효

과가 기대되거나 실행력 있는 대책을 선정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실증적인 실천을 통해 효과가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주지·보급한다.

나. 건설업 대책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떨어짐 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추락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 펜스나 난간 등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용 기구의 사용, 사다리·접사다리 등의 안전한 사용 등 고소에서 떨어지는 사고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떨어짐 사고재해방지와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한다.
- 근로자의 열사병이나 소음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에 있어서 열사병 예방 기본대책요강”(2021년 4월 20일자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통달 0420 제3호, 이하 “직장에 있어서 열사병 예방 기본대책요강”)에 따른 WBGT 지수(더위 지수)의 파악과 WBGT 지수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 실시, ‘소음장애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1992년 10월 1일자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통달 제546호, 이하 “소음장애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노동위생 교육 등 건강장애 방지대책을 실천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건설업에 있어서 사망재해의 약 40%가 떨어짐 사고라는 점에서 “건설업에 있어서 떨어짐 방지대책의 내실화에 관한 실무자 회의 보고서”(2022년 10월 28일 공표)을 토대로 확실한 비계 점검 실시, 외줄비계 사용 범위의 명확화 등 떨어짐 사고 재해방지대책을 내실화·강화한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성과 연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설시공의 자동화, 자율화, 원격화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수반되는 안전대책에 대하여 검토한다.
- 지진,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재건공사 시 노동재해방지대책을 철저히 한다.
- “건설공사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6년 12월 16일 법률 제111호)에 따라 국토교통성과 긴밀한 연계 하에 건설공사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직장에 있어서 열사병 예방 기본대책요강”과 ‘소음장애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주지·지도 등 건강장애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다. 제조업 대책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끼임·말림 사고 등에 의한 노동재해 우려가 있는 고위험 기계 등을 대상으로 제조사(업체), 사용자(유저) 각각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노동재해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계의 포괄적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2007년 7월 31일자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통달 제0731001호)에 따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제조 시 위험성 평가 실시 후에도 남아 있는 리스크 정보를 제조자가 기계 사용자에게 확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를 정비한다.
- 기능 안전을 추진함으로써 기계 등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대체 조치를 통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기계 등을 대상으로 국제규격 정합화 등 기술 진전에 대응한 안전기준(보일러 구조규격 등)을 재검토한다.
- 작업 절차의 이해, 위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VR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더욱 안전하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검토한다.
- 기능 안전을 활용해 위험한 작업을 신뢰성 높은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현장 작업자가 노동재해를 입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실천한다.

라. 임업 대책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체인톱을 이용한 벌목작업 등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년 1월 31일자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통달 0131 제3호)에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한 벌목 방법과 나뭇가지 처리 방법, 보호구의 착용, 긴급 시 연락체제 등의 정비와 주지, 통신기기의 배치, 교육훈련 등 안전대책을 확실히 실천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 노동재해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임목 벌목 시의 조치, 나뭇가지 처리 시 금지사항을 철저히 주지함과 동시에 하체 및 하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체인톱을 이용한 벌목작업 등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년 1월 31일자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통달 0131 제3호 개정), “임업 작업현장에 있어서 긴급연락체제의 정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2020년 1월 31일자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통달 0131 제4호 개정)’등을 철저히 주지하도록 한다.

- 임야청이나 지방공공단체, 노동재해방지단체 등과 연계해 유관기관 연락회의의 개최, 합동 순찰 실시, 노동재해방지단체의 안전관리사나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의 임업 보급 지도원 등의 지도 등 각 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7) 근로자의 건강확보대책의 추진

가. 정신건강 대책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스트레스 체크를 실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 체크 결과를 기본으로 집단 분석을 실시하고 그 집단 분석을 활용한 직장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의 악화를 예방한다.
- “사업주가 직장에 있어서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한 언동에 기인하는 문제 관련 고용관리상 강구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한 지침”(2020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5호)에 따른 시책을 비롯해 직장에서의 괴롭힘(harassment) 방지대책을 실천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산업보건센터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정신건강대책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스트레스 체크의 실시, 집단 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스트레스 체크 수검, 집단 분석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지시킨다.
- 집단 분석, 직장환경 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 스트레스 체크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한다.
- 건강 경영이라는 시점을 포함해 정신건강대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의와 이점(결근, 업무수행능력저하(presenteeism), 경영손실 방지 등)을 가시화하고, 경영층의 의식 계발을 강화한다.
-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계발한다.
- 직장에 있어서 괴롭힘(harassment) 방지대책을 실천하도록 주지하고 대책을 추진한다.

나. 업무과중 대책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업무과중에 의한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따라 시간외·휴일노동시간을 감축한다.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의사의 면접지도 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면접 지도, 보건사·간호사 등 산업보건 직원의 상담지원을 받도록 권장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2014년 법률 제100호)에 따라 2021년 7월 30일 각료회의를 통과한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대강”에 따른 시책 이외에도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 ① 업무과중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지도, “노동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지·지도 등을 수행한다. 특히 운송업·우편업의 경우, 전 업종에서 뇌·심장질환에 의한 산재 신청 지급 결정건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20●●년 ●월 ●일 후생노동성 고시 제●호)’의 주지·지도 등에 힘쓴다. 【P】
- ② 의사의 면접지도 대상인 장시간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면접 지도를 권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하여 효과적인 주지 방법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주지시킨다.

다. 산업보건활동의 추진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사업장마다 상황에 맞춰 산업보건활동을 실시하므로 필요한 산업보건 직원을 확보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보건 직원이 필요한 연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다.
- 치료와 일의 양립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연수 등 환경을 정비한다.
- 사업자 및 근로자는 의료기관이나 지원기관 등의 양립 지원 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료와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지원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산업 현장의 니즈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산업보건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보건의 바람직한 자세에 관한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을 통해 산업보건과 관련된 자의 역할 분담과 연계, 보험자 등과의 연계에 있어서 바른 방법,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보건활동의 바람직한 모습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 건강경영이라는 시점을 포함해 산업보건활동을 실천하는 의의와 이점을 가시화해 경영층의 의식 계발을 강화한다.
- 기업이나 의료기관 및 근로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에 있어서 치료와 일의 양립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등을 주지시키고 계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립 지원 코디네이터’의 활동 상황을 파악해 더욱 효과적인 배치를 검토하고 활용한다.
-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산업보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보건활동을 지원해 나간다.
- 사업협동조합, 상공회, 상공회의소 등이 회원 등에게 산업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한다.

(8)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대책의 추진

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대책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화학물질을 제조, 취급하거나 양도 제공하는 사업자는 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외부 전문 인재의 활용을 통해 다음 사항을 적확하게 실시한다.
 -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제조 시 등에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율적 노출저감조치의 실시하며, 양도 제공 시 라벨표시·SDS를 교부한다.
 -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입수한 SDS 등에 따라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노출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화학물질 관리자 강습(법정 및 법정 외) 텍스트 등의 교재를 작성해 화학물질 관리자 등을 육성 지원한다.
- 위험성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농도 기준치 준수를 위한 업종별·작업별 화학물질노출 방지대책 매뉴얼의 작성을 지원한다.
- 업종별 특징을 파악해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상담 창구·방문 지도·인재육성(강습회)의 기회를 제공한다.
- 각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 수준에서 화학물질 관리 전문가 리스트 등을 작성해 사업자가 전문가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협의회를 발족시킨다.

- <노동안전보건종합연구소 화학물질정보관리연구센터>의 GHS 분류·모델 SDS 작성, 제작 샘플(CREATE-SIMPLE, 간이 위험성 평가툴)의 업그레이드 및 주지 등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를 지원한다.

나. 석면,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대책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적정한 사전조사를 위해 ‘건축물 석면 함유 건재 조사자 강습’을 수료한 자 등 석면 사전조사와 관련해 전문성을 보유한 자가 철저히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석면 사전조사 결과보고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석면노출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 해체·개보수 공사의 발주자가 석면노출 방지대책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분진노출작업에 수반되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분진장애방지규칙” 기타 관계 법령의 준수와 더불어 10차 분진장애 방지대책에 따라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한다.
- 터널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는 소속 사업장이 빈번히 바뀌는 터널공사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쉽게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수도(隧道) 등 건설 근로자 건강관리 시스템’에 근로자의 진폐 관련 건강정보, 유해업무 종사력 등을 등록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석면 사전조사 결과보고 시스템’의 운영과 포털 사이트상의 정보 공개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 ‘공작물 석면 함유 건재 조사자 강습’의 표준 텍스트 등을 작성한다.
- 개정 “석면장애예방규칙(2005년 후생노동성령 제21호)”, 최신 분석방법 등 지식 제공을 위한 계발용 동영상 제작하고 강습회를 실시한다.
- ‘건축물 석면 함유 건재 조사자 강습’ 등 충분한 강습 기회를 제공한다.
- 강습 실시기관에 있어서 강습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한다.
- 건축물의 해체 등에 관한 석면노출방지 및 석면 비산 누출방지대책 매뉴얼의 내실화 등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널리 알린다.
- 해체·개보수 공사 발주자(개인주택 시공주 포함)의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연계하고 발주자의 배려의무에 이러한 사항을 주지시킨다.
- “10차 분진장애방지종합대책”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 사용의 철저 및 적절한 사용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 소속 사업장이 빈번히 바뀌는 터널공사 종사 근로자의 진폐 관련 건강정보, 유해 업무 종사력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업노동재해방지협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터널공사 종사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내실을 기한다.

다. 열사병,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대책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직장에서의 열사병 예방 기본대책요강”을 토대로 WBGT 지수(더위 지수)를 파악해 WBGT 지수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 아울러 위생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증상 발현 시·긴급 시 조치를 확인한다. 그 외에 열사병 예방에 효과적인 기기·용품을 활용한다.
- 근로자는 고온작업 시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늘 일상적 건강관리에 힘쓰고, 더위에 적응하는 서열순화(acclimatization to heat) 후에 작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작업 중에는 정기적으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는 한편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에는 주저없이 주위의 근로자나 관리자에게 말한다.
- 근로자의 소음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장애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산업위생교육 등을 실천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열사병 예방대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본공업규격(JIS)에 적합한 WBGT 지수 측정기, 열사병 예방에 효과적인 기기·용품을 보급한다. 아울러 열사병 예방대책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도록 선진 사례의 소개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툴을 제공한다. 동시에 “직장에서의 열사병 예방 기본대책요강”을 홍보하고 또 지도한다.
- 근로자의 소음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장애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의 활동을 지도하고 측정을 지원한다.

라. 전리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대책

(가)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이하 “폐로 작업”), ‘귀환곤란구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제염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피폭선량관리, 피폭저감대책, 건강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한다.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긴급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자력

- 시설 등에 있어서 긴급 작업 종사자 등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침”(2015년 8월 31일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침 공시 제5호)에 따른 건강관리를 시행한다.
- 의료 종사자의 피폭선량관리 및 피폭저감대책을 위한 노력을 실천함과 동시에 피폭선량 측정결과 기록 등을 철저히 보존 관리한다.

(나) (가)항의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사항

- 폐로 작업 시 건강상담창구의 설치, 작업 지휘자 등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한다.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긴급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직 후에도 장기적으로 피폭선량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건강 상담 등을 통해 꾸준히 장기적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노동안전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한다.